

의문사위, 전 보안사과장 '공개수배'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30일 80년대초 강제징집된 운동권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락치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해 80년대초 보안사과장이었던 서모(62)씨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서씨는 82년 9월 녹화사업 전담과인 보안사 3처5과가 신설되면서 과장에 발탁됐고 이후 84년 11월 이 과가 폐지될 때까지 과장직을 수행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3처5과 직원들이 "서씨가 직원들에게 고문기술을 가르쳤고 구와 폭행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을 심사장교와 군무원들에게 시범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서씨가 당시 녹화사업 주무과장으로 이윤성, 김두황씨 등 강제징집자들의 사망사건을 은폐하는데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특히 위원회 조사에서 "기무사에 녹화사업과 관련해 캐비닛 17개 분량의 문서가 영구보존문서로 이첩됐다"고 진술해 '관련자료가 모두 폐기됐다'는 기무사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서씨는 지난 20일 "녹화사업 진행과정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소각했다"며 소각장면이 담긴 사진을 위원회에 제출한 후 26일에 실시된 1차 실지조사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은 상태다.

위원회측은 서씨가 개인기록을 완전히 태웠다고 보기는 힘들고 다른 기록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서씨를 계속 추적하기로 하고 이날 서씨를 보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연락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서씨가 갖고 있는 녹화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씨의 집을 찾아가 2차 실지조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서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되지 않아 실지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 관계자는 "서씨가 제발로 나타나지 않는 한 도리가 없다"며 "위원회가 압수수색·계좌추적·통화내역 조회는 물론 구인이나 수배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언론을 통한 '공개수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녹화사업' 자료 소각뒤 잠적

前 보안사과장 공개수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1980년대초 강제징집한 운동권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과 관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잠적한 전 보안사과장 서모씨(62)를 의문사위가 30일 언론을 통해 '공개수배'했다. 서씨는 의문사위에 자신이 보관중인 녹화사업 관련 자료를 넘겨주기 직전 이를 소각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한 사진만 의문사위에 보낸 바 있다.

서씨는 의문사위 조사에서 "보안사 근무 시절 캐비닛 17개에 녹화사업 관련 자료를 담아 타 부처로 이관했다"고 진술해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됐다'는 기무사와 상반된 주장을 했다. 서씨는 특히 "1983년 이후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등은 녹화사업 자료를 토대로 종교, 노동, 학원가에 대해 '평화공작'이라는 대규모 좌경운동 색출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씨는 지난 20일 "녹화사업 진행과정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소각했다"며 소각장면이 담긴 사진을 21일

의문사위에 보내고 자신의 집에 대한 두차례의 실지조사도 거부한 채 잠적했다. 서씨가 소각한 문서에는 강제징집자의 조사 및 프락치 공작내용, 개별 책임자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홍목기자 ahn@kyunghyang.com

의문사위, 80년대초 '녹화사업' 관련

前보안사과장 공개수배

강제징집자 사망 은폐의혹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0년 대 초 강제징집된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락치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해 당시 보안사 과장이었던 서모(62)씨를 '공개수배'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서씨는 1982년 9월 녹화사업 전담과인 보안사

3처5과가 신설되면서 과장에 발탁 됐고, 이후 84년 11월 이 과가 폐지될 때까지 과장직을 수행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3처5과 직원들이 "서씨가 직원들에게 고문기술을 가르쳤고, 구타와 폭행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을 심사장교와 군무원들에게 시범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서씨가 당시 녹화사업 주무과장으로 이윤성,

김두황씨 등 강제 징집자들의 사망사건을 은폐하는 데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씨는 최근 위원회 조사에서 "기무사에 녹화사업과 관련해 캐비닛 17개 분량의 문서가 영구 보존문서로 이첩됐다"고 진술해 '관련자료가 모두 폐기됐다'는 기무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서씨는 지난 21일 "녹화사업 진행과정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소각했다"며 소각장면이 담긴 사진 3장을 의문사위에 제출한 뒤 26일에 실시된 1차 실지조사를 거부하고 잠적했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녹화사업 중요자료 소각

前 보안사과장 공개수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녹화사업(학생운동관련자에 대한 강제징집 및 프락치공작) 중요자료를 소

각하고 잠적한 1982년 당시 보안사령부 심사과장 서의남(徐義男·62·사진)씨를 공개 수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서씨는 82년 9월부터 2년 가량 보안사 과장직을 맡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고문기술 등을 가르친 녹화사업 핵심 관련자"라며 "김두황·이윤성 사건 등 녹화사업 도중 발생한 의문사 은폐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자료의 잔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등촌동 서씨 집에 대한 2차 방문(실지)조사에 나섰으나 서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Witness on Suspicious Deaths Wanted by Presidential Commission

A presidential fact-finding commission yesterday fumed due to the actions by one of its key witnesses, who submitted a photo showing he burned a diary which reportedly contained key evidence related to the deaths of young soldiers in the early 1980s.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said yesterday it does not know the whereabouts of Seo Ui-nam, a former army intelligence official, as he severed all contacts with acquaintances and apparently left his home.

"The commission lacks the legal power to arrest him or search his house," said a frustrated official. It can only levy fines of up to 10 million won.

Seo, who underwent interrogation by the commission earlier this month, was in possession of key evidence on the Nokhwa, or Greenization, Project from 1983-1984.

In his three meetings with investigators, Seo claimed he was unrelated to the deaths of young conscripts who were forced to alter their ideological beliefs and work as spies.

From 1982-1984, Seo was director of the military intelligence



agency's division which planned and executed the project, to which some 500 young men were subjected.

"Seo said he had a detailed journal from his military service, which he showed to us," a commission official claimed yesterday.

The journal, which investigators were shown on Aug. 19, gave a detailed account of the Nokhwa Project, a potential gold mine of evidence regarding the case.

The commission requested to obtain a copy from Seo, who refused, and on Aug. 20 he sent three photos of the burned diary to the investigators.

The Chun Doo-hwan government forcefully conscripted 477 college student activists from 1982-1984, according to the Nokhwa Project.

Aimed at converting "red" or pro-Communist students into "green" ones, the effort has been linked to the deaths of six young men in their early 20s.

ssm@koreatimes.co.kr

한국 대선 후보자 선거

한국 대선 후보자 선거

두 전직 대통령 의문사위 동행명령 '불응' *

지난 80년대초 강제징집 대학생들을 상대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이업'과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전두 전직 대통령이 4일 동행명령 집행에 '불응'했다.

진상규명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자택을 찾아갔지만, 전 전 대통령이 개인적 약속을 이유로 오전 7시께 바람에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위원회 관계자에게 "전 전 행위와 녹화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배포한 자료를 통관의 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법원의 사전영장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이어 같은 연희동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이 신병치료차 얼마전 시골로 요양을 갔다고 비서관들이 밝힘에 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진상규명위는 두 전직 대통령이 동행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의문사 특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동행명령 집행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의 경비를 맡고 진상규명위 조사관들에게 무리한 신분 확인과정을 요구하면서 조사관을 온 유가족들과 10여분간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

최종 편집: 2002년 09월 04일 11:08:38

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

4일 동행명령 집행키로

의문사규명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일 이른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을 4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80년대 초 강제징집 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의 입안 및 실행에 두 전직 대통령이 깊이 관여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노 전 대통령은 진상규명위의 출석 요구를 받아왔으나 이를 거부해 24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전-노前대통령 동행명령

의문사위 4일 집행키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지난 1980년대초 강제징집 대학생들을 상대로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에 대한 조사와 관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을 오는 4일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녹화사업' 입안 및 실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진상규명위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지난 달 24일 위원회에 의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황현택기자

전직 대통령의 명예때문이라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0년대 초 이뤄진 '녹화사업'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네 사람에게 오늘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이 녹화사업을 포함한 정권의 공과에 대해 역사적·사법적 검증을 받았는데 이들을 소환하려는 것은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모욕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들을 소환한 것은 군에 강제 징집된 뒤 군부대 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운동권 대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 근거였던 녹화사업의 목적과 진행 과정을 밝히는 일은 위원회의 기본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전두환씨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녹화사업을 직접 지시했고, 노태우씨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었으며, 이들과 함께 소환된 이학봉씨는 합수부 수사단장, 서정화씨는 녹화사업 기획문서의 작성 당시자인 내무부 장관이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

래를 열어가기 위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데 관련 당사자들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노씨가 김용갑 의원의 주장대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소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전씨가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강변한 대로 "대학생 징집조치는 당시의 주무부처가 정당하게 입안·시행한 국가시책이었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나가 그런 주장을 펼 것이다.

전직 국가원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원하는 바다.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 협조하면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일이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소환을 거부하면서 억지 주장을 폈는 것으로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린 채 추징금도 내지 않는 범죄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명예를 들먹이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집비우고 어디 갔나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노태우 전 대통령 집 앞에서, 녹화사업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박래군 조사3과장(오른쪽)이 경비책임자한테서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 칙칙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전·노씨 '녹화사업' 동행명령 불응

의문사위, 과태료 부과 검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980년대 초 '녹화사업'과 관련해 4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으나, 두 사람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의문사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아갔지만, 전 전 대통령이 개인약속을 이유로 아침 7시께 집을 비워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녹화사업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前대통령들 동행명령 불응

1980년대 초 강제 징집 대학생들을 상대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동행명령장을 내보이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측은 모두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2. 9. 5



/ 김문석기자

'역사 바로세우기'의 고난

의문사진상규명 유가족 대책위 회원들이 4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대통령집앞에서 전씨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全·盧씨 동행명령 불응

의문사조 과태료 검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의문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전씨의 자택에 조사관을 보내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고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전씨가 오전 7시쯤 개인적인 약속을 이유로 집을 비워 집행하지 못했다.

의문사위는 "두 전직 대통령이 동행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채 행정기관의 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씨도 비서관들이 "신병치료를 위해 얼마전 시끌로 요양을 가 집에 없다"고 밝힌 채 조사를 거부, 집행에 실패했다.

의문사위는 "두 전직 대통령이 동행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2002. 9. 5

대한매일만평

백무현 bmh@kdaily.com



2002. 9. 5

한국일보



동행명령장 전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수사관들이 4일 전두환 전 대통령 집을 방문. 이양우(왼쪽) 변호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한 뒤 기자들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의문사조 동행명령 전두환·노태우 불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4일 80년대 초 대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사업(녹화사업) 조사와 관련,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집행에 나섰으나 두 사람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전씨는 개인적인 약속을 이유로 오전 7시께 집을 비웠고, 노씨는 신병 치료자 요양을 떠났다고 비서관들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들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번 이날 동행명령 집행 과정에서는 전씨 자택 주변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과 항의 방문을 온 유가족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진혁기자 river@hk.co.kr

**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
의문사委 '동행명령' 불응**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4일 지난 80년대초 운동권 출신 강제징집자들을 대상으로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녹화사

업'과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두 사람이 집을 비워 무산됐다. 규명위는 동행명령에 불응한 두 전직대통령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무색한 동행명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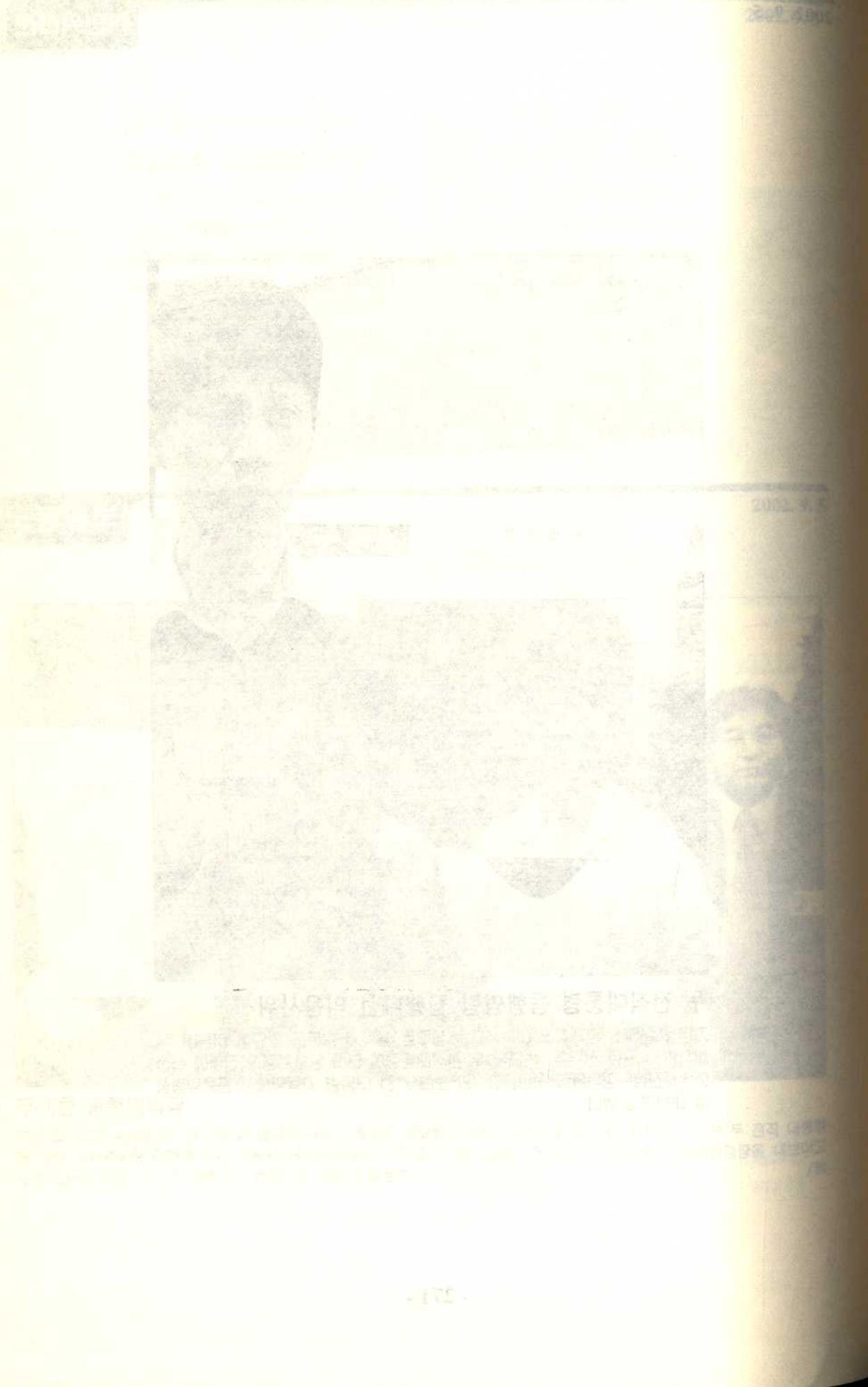
지난 80년대초 강제징집 대학생들을 상대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원들이 4일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앞에서 동행명령장을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날 두 전직 대통령은 동행명령 집행에 불응했다.



두 전직대통령 동행명령 집행나선 의문사위

지난 80년대초 강제징집 대학생들을 상대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원들이 4일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앞에서 동행명령장을 내보이고 있다.

한의철 사건 관련 보도



'의문사 한희철씨 자살 공권력 개입원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1983년 군부대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한희철(당시 22세)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씨의 유서와 서울YMCA 총무에게 보낸 편지 등을 볼때, 한씨는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감, 죄책감 등에 기인한 것인만큼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사건 중 자살로 판명된 사건에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명위는 또 '보안사 조사를 받게 된 계기인 수배자 신모씨를 돋기 위한 활동은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돋기 위한 활동이며 자살 또한 보안사의 '녹화사업'에 대한 고발과 항거의 표현인 만큼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학생운동을 하다 82년 입대한 한씨는 이듬해 함께 야학활동을 하던 수배자 신모씨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했다가 이 사실이 탄로나 보안사에서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공작인 '녹화사업' 차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근무지 초소에서 가슴에 실탄 3발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진상규명위는 한편 87년 수도방위사령부 근무중 청와대 외곽경비지역에서 숨진 노철승씨 사건과 관련, '민주화관련성이거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없었다'며 '그러나 당시 중대장이 노씨 자살사건에 대한 문책을 우려, 노씨 동료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헌병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조사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2002. 6. 26

'녹화사업' 자살 한희철씨**의문사위 "軍가혹행위 탓"**

1983년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국군 보안사의 '녹화사업' 도중 가혹행위를 비관, 자살한 서울대생 한희철(당시 22세)씨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6일 기자회견

을 갖고 "한씨를 조사했던 보안사 녹화사업 전담 정훈장교로부터 '동등으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한씨가 고문에 대한 두려움과 동료들을 배신한 데 따른 양심의 가책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문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자살 동기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ynhwa.co.kr

2002. 6. 27

83년 서울대생 한희철씨 의문사 인정**진상규명위 "공권력 가혹행위로 자살"**

1983년 경기 연천군 제5사단 사령부 초소에서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韓熙哲·당시 22세)씨가 신군부의 '녹화사업' (민주화운동 학생들에게 끄적치 활동을 강요하는 것) 과정에서 받은 가혹행위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따라 그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씨의 유서 등으로 비추어볼 때

한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그는 당시 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 조사과정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 때문에 숨졌으므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의한 의문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희철씨 사건은 진상규명위가 의문사로 인정한 4번째 사건으로 자살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위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한겨례

2002. 6. 26

녹화사업 관련 고문·자살**한희철씨 민주화운동 인정****의문사규명위 심의 요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군 복무 당시 군대 내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목돼 1983년 12월 보안사에서 고문을 당한 뒤, 자살한 한희철(당시 22살)씨의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한씨는 휴가중 광주민중항쟁 등에 관련돼 수배당한 후배들에게 주민등록증 용지를 구해주기 위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보안사의 조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당시 보안사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씨의 자살은 "보안사 녹화사업에 대한 고발과 항거의 표현이었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이런 결론에 따라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2002. 6. 27

"1983년 軍서 자살한 한희철씨 공권력에 희생"**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3년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 경계근무 중 자살한 서울대생 한희철(당시 22세)씨와 관련, "사망 원인이 보안사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두려움에 기인하는 만큼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인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자살로 판명된 사건에 공권력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방침이다.

/陳仲彦기자 jinmir@chosun.com

朝鮮日報

‘공권력에 의한 자살’ 첫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녹화사업 한희철씨 확인

자살 사건이 처음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있는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983년 군 초소 근무중 가슴에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서울대 휴학생 한희철씨(당시 22세)에 대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이 의해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한씨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문덕형 상임위원은 “한씨의 유서와 편지 등을 볼 때 한씨의 사인은 자살로 보인다”며 “하지만 유서와 편지의 내용으로 미뤄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당시 보안사령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유린을 고발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위원은 이어 “재학시 운동권이었던 한씨는 민주화운동 관련 수배자인 신모씨를 도우려다 보안사의 조사를 받았으며 자살도 보안사의 ‘녹화사업’에 대한 고발과 항거의 표현이니 만치 민주화운동과 관련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진상규명위에서 자살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인정한 점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이날 장종훈(진정13호)·노철승(44호)·최봉대(80호) 사건은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87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청와대 외곽경비지역에서 숨진 노철승 씨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 관련성이 나 위법한 공권력행사가 없었다”며 “그러나 당시 중대장이 노씨 자살사건에 대한 문책을 우려해 노씨 동료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현병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조사가 잘못됐음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배자승기자 cameo@kyunghyang.com

‘공권력에 의한 자살’ 첫 인정

‘녹화사업’ 한희철씨 민주화 관련 의문사 확인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1983년 군부대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생 한희철(당시 22세)씨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결정이 내려
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씨는 신군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보안사에 끌려가 폭행과 고문을 당했으며 이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감, 운동권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 등을 고발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진상구명위는 또 “한씨는 수배자 신모 씨에게 도움을 주다가 보안사 조사를 받게 됐으며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돋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한씨의 자살은 권위주의 통치와 ‘녹화사업’에 대한 고발과 항거의 표현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가 자살로 판명된 사건을
민주화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
로 인해 발생한 의문사로 인정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신규부에 맞서 학생운동을 하다 82년

입대한 한씨는 이듬해 함께 야학활동을 하던 수배자 신모씨를 돋다가 이 사실이 탄로나 보안사에서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공작인 '녹화사업' 차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근무지 초소에서 가슴에 실탄 3발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87년 수도방위사령부에 근무하다 청와대 외곽경비지역에서 숨진 노철승씨 사건과 관련, “민주화관련성이거나 위법한 공권력행사는 없었지만 당시 중대장이 노씨 자살사건에 대한 문제를 우려해 노씨 동료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현병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조사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종철 부천 민주화운동자 이정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조준희)는 26일 지난 91년 '고 강경대군 상해치사 사건' 재판정에서 민주화 요구에 대한 노태우 정권의 폭력적 탄압을 비판한 활동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 박종철씨의 부친 박정기씨를 민주화운동 관여자로 인정했다.

공권력항거 軍복무중 자살 한희철씨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보상심의 요청

공권력의 부당한 가혹행위에 항거한 자살도 민주화운동에 의거한 의문사로 인정된다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본보 4월26일자 31면 보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6일 1983년 군 초소 근무중 가슴에 소총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생 한희철씨(당시 22세)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에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문덕형 상임위원은 “1983년 12월6일부터 10일까지 한씨를 조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 녹화사업 전담 정훈장교(당시 중위)로부터 조사 도중 한씨를 봉동으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한씨는 보안사의 녹화사업과 관련한 폭행 등 불법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으며 유서에도 ‘전두환 보안사병관 귀하’라는 문구를 남겨놓았다”고 밝혔다.

이학준기자 arisu@kmib.co.kr

자살판정 의문사 한희철씨 사건

“위법한 공권력 때문” 첫 인정

진상규명위,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요청 ‘녹화사업’ 고발·항거 사망으로 인정돼

가 의문사한 뒤 편지가 군부대 밖으로 유출되면서 보안사의 가혹행위 등이 세상에 공개됐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수배자 신모씨를 돋기 위한 활동은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돋기 위한 활동이며 자

살 또한 보안사의 ‘녹화사업’에 대한 고발과 항거의 표현인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 2면으로 이어짐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자살로 판정된 의문사라도 가혹행위 등 부당한 행위가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6일 “지난 1983년 12월 경기도 연천군 모부대 초소에서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한희철(당시 22세)씨는 자살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보안사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죽음으로 항거한 만큼 민주화 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통해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보안사 조사와 관련 육체적·정신적 고통 △죄책감을 표현한 유서 △사망 당시 근무자들의 진술 △총상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자살의 근거로 제시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학생운동을 하다 지난 82년 일대한 한씨는 함께 야학활동을 하던 수배자 신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했다가 이 사실이 탄로나 보안사의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는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끌어치울 행동공작인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안사는 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 김금, 폭행,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보안사의 조사 과정에서 운동권 동료와 조직에 관해 진술, 정신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자신이 몸담았던 성남 YMCA의 총무에게 보내는 편지와 유서를 동료 부대원에게 전달, 한씨

2002. 6. 27

노동일보

“위법한 공권력 때문” 첫 인정

▶ 1면에서 이어짐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지난 87년 수도방위사령부 근무 중 청와대 외곽경비지역에서 숨진 노철승씨 사건과 관련, “민주화관련성이거나 위법한 공권력행사는 없었다”며 “그러나 당시 중대장이 사고경위를 조작하고 허위진술을 지시하는가 하면 현내도 불철저한 수사를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조사대상 83건 가운데 20건을 종결처리했다. 종결처리 사건 가운데 한씨 사건을 포함 4건은 민주화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인정됐고 15건은 기각, 1건은 취하됐다.

조사건수 가운데 녹화사업과 관련된 사건은 6건이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녹화사업’ 자살 한희철씨

민주화 관련 의문사 인정

진상규명위 “軍가혹행위 탓”

1983년 군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가슴에 소총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생 한희철(당시 22세)씨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한씨는 신군부가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 공작으로 진행한 ‘녹화사업’ 과정에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폭행과 고문을 당했으며, 운동권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과 보안사의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고발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자살로 판명된 사건을

민주화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개입으로 발생한 의문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녹화사업이 족벌한 의문사에 대한 첫 결정으로 이운성씨 사건 등 다른 녹화사업 사망 사건의 최종 결정도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87년 수도방위사령부 근무중 청와대 외곽경비 지역에서 숨진 노철승씨 사건과 관련, “민주화 관련성이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없었지만 당시 중대장이 노씨 자살사건에 대한 문제를 우려, 노씨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헌병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는 등 조사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한희철씨 軍 경계근무중 자살 “위법한 공권력행사가 원인”

의문사규명위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1983년 군부대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한희철(당시 22세)씨 사건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한씨의 유서와 서울 YMCA 총무에게 보낸 편지 등을 볼 때 한씨는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감, 죄책감 등에 기인한 것인 만큼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자살로 판명된 사건에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석규기자 skpark@sgt.co.kr

1983년 軍복무중 숨진 한희철씨

“공권력 위법 행사가 원인”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83년 군부대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한희철(당시 22세)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사건 중 자살로 판명된 사건에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한씨의 유서와 성남YMCA 총무에게 보낸 편지 등을 볼 때, 한씨는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의 조사과정에서 발

생한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감 죄책감 등에 기인한 것인 만큼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학생운동을 하다 82년 입대한 한씨는 이듬해 함께 야학활동을 하던 수배자 신모씨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했다가 이 사실이 탄로나 보안사에서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공작인 ‘녹화사업’ 차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근무지 초소에서 가슴에 실탄 3발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내 아들 죽음 민주화 초석 되었으면”

자살 민주화 첫 인정 한희철씨 부모 한상훈-김인연씨

“내 아들의 죽음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1983년 경기 연천군 제5사단 사령부 초소에서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韓熙哲·당시 22세)씨의 아버지 한상훈(韓相勳·74·왼쪽)씨와 어머니 김인연(金仁連·71)씨는 27일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지었다.

2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한희철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한씨 부부의 표정에는 20년 인고의 세월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김씨는 “당시 군은 아들이 그저 자살했다고만 밝혔을 뿐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내 아들이 군에서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죽었나 두려워하며 아들



의 시신을 회장한 것이 평생 마음의 한이 된다”고 말했다. 한희철씨는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83년 군에 입대한 뒤 ‘녹화사업’(민주화운동 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것) 과정에서 받은 가혹행위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김준배 사건 관련 보도

의문사委 과태료 부과 잘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97년 발생한 김준 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의 의문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현직 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규명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당시 수사검사였던 정윤기 현 영월지검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정 지검장은 “(김씨의) 부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위원회 측의 의문점은 조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행 명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물론 정 지검장의 생각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바로잡기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협조했으면 좋았을 뿐했다. 조사에 진전이 없을 경우 김씨 사건은 다른 조사대상들처럼 영원히 의문사로 남을 가능성이 커 위원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진행중인 의문사들은 집회 및 시위 관련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했던 ‘녹화사업’을 비롯해 대부분 독재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관련된 의혹이 짙은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진상을 밝힐 책임이 누구보다 국가 기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도 주로 국가기관들이 관계자 조사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해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의문사 83건 가운데 아직도 67건이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가 관련 국가기관들로 하여금 의문사 조사에 적극 협력케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 지검장도 위원회에 출두해 자세한 수사상황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국가기관의 협조 거부 장벽에 막혀 미제(未濟)로 남는다면 2000년 10월 대통령 소속으로 출범한 위원회 자체가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될 것이다.

위원회는 압수수색, 구인영장 청구 등의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국가기관의 비협조에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 관련 조항을 왜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던가, 활동기한이 9월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의문사위, 현직검사에 첫 과태료 조사과정 동행거부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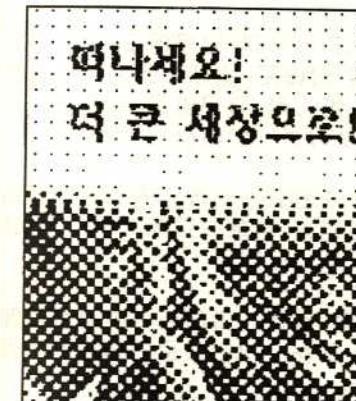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97년 발생한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의 의문사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의 동행 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검사였던 정윤기(鄭倫基) 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정윤기(鄭倫基) 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한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했을 때 위원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의문사위, 현직검사에 첫 과태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97년 의문사한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의 조사과정에서 이 위원회의 동행 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정윤기(鄭倫基) 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을 때 위원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9월 김준배씨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대해 "당시 부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위원회측의 의문점은 조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응했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라는 이유로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선미기자>kimsunmi@donga.com

의문사위, 현직검사에 첫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일 지난 8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의문사 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검사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과태료를 부과 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의문사특별법에 과태료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규명위가 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인물 또는 기관을 상대로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임을 빌미로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에 대해 위원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최근 정 지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결정,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 정 지청장 앞으로 오는 12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9월 구타와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부분 등 사건 핵심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일부한 동행명령장에 대해 "당시 부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위원회측의 의문점은 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이번 과태료 부과결정을 계기로 관련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위원회내 법무팀에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측은 그동안 진상규명위가 특별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권한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며 위원회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해왔다.

south@yna.co.kr

(끝)

의문사위, 현직 검사에 첫 과태료

김준배씨 관련 동행 불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7년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김준배(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씨 의문사 조사와 관련, 위원회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 지휘검사 정윤기 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동행명령을 거부한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과태료를 부과 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은,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에 대해 위원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9월 "당시 부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위원회측의 의문점은 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의문사위, 현직검사에 첫 과태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일 지난 8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의문사 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자회검사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의문사특별법에 과태료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규명위가 조사 활동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인물 또는 기관을 상대로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임을 빌미로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그동안 진상규명위가 과태료 부과권한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며 위원회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해왔다. /연합

동행명령 불응 검사에 과태료

의문사 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8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씨 의문사 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자회검사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

시 수사자회 검사인 정윤기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임을 빌미로 진상규명 활동에 비협조적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조사불응 현직검사에 첫 과태료

의문사진상위 “12일까지 의견진술 않을땐 부과” 통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일 198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의문사 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자회검사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에 대해 이달 12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과

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에 대해 위원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지청장 앞으로 이달 12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과

의문사규명위, 현직검사에 첫 과태료

동행명령 거부·조사 비협조에 대한 책임 물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동행명령을 거부한 현직 검사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4일 “지난 8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의 문사와 관련,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사건 당시 수사지휘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동행명령을 거부한 관계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는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라 정지청장 앞으로 오는 12일까지 구슬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지난달 28일 발송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에 대해 위원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을 계기로 관련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위원회내 법무팀에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임을 범미로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지청장은 지난해 9월 구타와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부분 등 사건 핵심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일부 동행명령장에 대해 “당시 부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위원회측의 의문점은 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류정민·기자 dongack@laborw.com

조사 불응 검사에 과태료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4일 “199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세)씨 사건과 관련,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 검사 정윤기(鄭倫基)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2000년 1월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3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이 권한을 실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태료만으로 의문사 규명 안돼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검찰 간부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 규명위는 198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씨가 경찰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동행명령을 8개월 이상 거부해온 정윤기 영월지청장에게 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의문사 진상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처음으로 발동된 셈이다.

의문사 규명위의 첫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검찰 간부라는 점은 규명위가 부딪치고 있는 현실적 난관을 상징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자행된 과거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사정기관 간부가 규명위의 조사활동을 정면으로 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문사 규명위의 활동에 협조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도 이 간부는 무시해버렸다. 우리는 규명위가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제재결정을 한 것은 옳다고 본다. 나아가 그동안 규명위의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처를 취해야 공평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벼운 과태료 부과가 의문사에 직·간접으로 간여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면죄부처럼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00년 10월 발족한 의문사 규명위가 장준하씨, 최종길씨 의문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에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이를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 학생들 사건 가운데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규명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게으름이나 직무유기 탓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정치권이 특별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규명위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의문사 규명작업이 유야무야로 끝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2002. 6. 5

김준배씨 의문사 조사불응 검사에 첫 과태료 방침

규명위, 12일까지 진술 통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월 지난 198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 숨진 김준배(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씨 의문사 조사와 관련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검사 정운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정 지청장이 규명위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지난달 28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것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발송했다"며 "오는 12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규명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는 첫 사례가 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에게 위원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9월 구타와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부분 등 사건 핵심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대해, "당시 부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위원회쪽의 의문점은 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응한 바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2002. 7. 1



동영상보기 ▶ 저속
 고속

민주화운동 공로 인정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쫓기다 숨진 한총련 간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총련 간부로 경찰의 수배를 받던 김준배 씨.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다 지난 97년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폭행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 의문사위원회는 김 씨가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진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노동법 날치기통과 등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해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구체적인 심의의 우려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권, 또 민주화의 정신 이걸 증거로 해서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자: 이번 결정에 대해 수사검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기자: 하지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남용돼 김 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왔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를 또 대체입법하거나 이렇게 하기를 정부 또는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국가기관 사이의 시각차는 앞으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의문사규명위 조사 거부

현직 검사등 2명 과태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위원회 조사활동과 관련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정윤기 검사와 조아무개(57)씨에 대해 각각 7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위원회는 조사 요청에 불응한 대상자에게 위원장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 검사는 1997년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살)씨 사건의 수사지휘 검사로서 김씨의 의문사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해 왔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연합뉴스

동행명령 불응 검사에 과태료 70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일 지난 1997년 경찰에 쫓기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세)씨 의문사와 관련,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정윤기 검사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씨 사망 당시 수사지휘 검사로 의문사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해 온 정 검사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진상규명위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규명위는 이와 함께 74년 비전향장기수 최석기씨 의문사와 관련, 전향을 강요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조모씨에 대해서도 동행명령 불응과 관련, 이날 1천만원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다.

south@yna.co.kr

(끝)

97년 추락사 김준배씨

의문사위, 민주화 판정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9일 지난 97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경거작전 중 추락, 의문사한 김준배(당시 27세)전 한총련 투쟁국장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의문사규명위 김준곤 제1상임위원은 "김씨가 이적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한총련 간부로 활동했지만 문제가 된 한총련 강령 작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로 사회적 주제를 갖고 학생운동을 이끌었다"면서 "김씨의 한총련 가입이 민주화를 위한 운동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김씨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정사유를 밝혔다. /김충남기자

전 한총련간부 고김준배씨 민주화운동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199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김준배(당시 27세, 한총련 투쟁국장)씨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사법부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5기 한총련의 핵심간부였던 김씨의 활동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됨에 따라 한총련 이적규정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진상규명위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 사망당시는 노동법,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와 대통령 아들의 정치개입 등 정부의 권력행사 방식이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었다'며 '날치기 통과 규탄, 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한 김씨의 활동은 개별적 권리주주의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숨진 김씨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한총련은 김씨 활동 이전인 4기까지 그 강령이나 행동이 5기 이후의 그것들과 대동소이함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기소, 처벌된 예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국보법 개정·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한국이 가입한 국제연합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비춰볼 때 국보법을 근거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국보법 위반자 검거를 위한 과도한 경찰특진제와 이로 인한 부당한 프락치 공작 그리고 경찰관 이모씨가 김씨를 발로 밟고 몽둥이로 폭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요인들이 김씨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만큼 김씨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민주화보상심의위에 김씨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했으며 김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난 이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규명위는 한편 위원회 권고를 통해 '국보법 사건이 '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있고,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정부에 국보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국보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신속히 개정하거나 폐지(대체입법 포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혀, 국보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south@yna.co.kr (끝)

의문사위, '김준배 씨 공권력에 의해 사망'

지난 1997년 의문사 한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에 의해 숨졌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는 오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김 씨가 아파트 13층에서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 선을 잡고 내려오다 3층에서 추락한 것은 경찰의 안전 대비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저항할 힘이 전혀 없는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기 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등을 규탄한 김 씨의 활동을 권리주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민주화 보상 심의 위원회에 김 씨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김 씨를 폭행한 경찰관 이모 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끝) 2002-07-09-09:05 원종진 기자

2002. 7. 9

경찰 피하다 추락사한 '한총련 前간부' 의문사진상규명委, '민주화운동' 인정

97년 숨진 김준배 씨... '한총련에 대한 입장' 논란 예상

손병관 기자 :edguard@ohmynews.com

<제2신: 10일 오전1시10분>

중앙일보 사설, 의문사위원회 결정에 문제 제기
당시 수사검사 "김준배, 민주화관련자 아니다" 반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www.truthfinder.go.kr, 이하 의문사위원회)의 김준배 사건 결정에 대해 언론사들간에 미묘한 시각 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당시 사건 수사검사가 의문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일간지들중에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국가기관, 보안법 개폐 권고>, <'보안법 폐지' 국가기관 첫 제기>이라 는 제목으로 각각 1면과 2면의 머리기사로 의문사위원회 결정 내용을 보도했다. 두 신문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으로서 의문사위원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점에 주목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사회면 머리기사(보핵 찬반 충돌 움직임)로 한총련을 바라보는 학계, 시민단체의 엇갈린 의견을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기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안법 개정·철폐를")와 함께 별도의 사설로 동 사안에 대한 신문의 비판적인 입장장을 드러내는 신속함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사설(한총련 간부의 민주화 인정 논란)에서 "논란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영장이 발부돼 체포과정에서 숨진 사람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 위반자로 영장이 발부돼 체포과정에서 숨진 사람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총련의 과격한 노선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 등은 학생운동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었다.

최근 한총련이 일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적단체 규정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한총련 간부의 사망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짓는 것은 일반인의 정서에 비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난 4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가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벌써 잊었는지 궁금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례적으로 동 사안을 각각 3단 기사로 짤막하게 처리했다. 동아일보의 경우 지난 6월5일 97년 김준배 사건의 수사자획 검시였던 정윤기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에 대한 의문사위원회의 과태료 부과를 응호하는 사설을 게재



▲ 97년 9월 16일 경찰의 검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2002. 7. 9

한 적이 있다.

한편, 연합뉴스는 9일 "정 지청장이 '김준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정 지청장은 "위원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로 제시하지 않은 채 신빙성 없는 목격자 진술과 일본 법의학자의 일방적 소견만으로 경찰관의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했다. 김씨의 사망원인은 추락사가 분명하다"

"김씨 사망원인 규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본인에 대해 소환을 요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동행명령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이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헌법쟁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신: 9일 오후4시10분>

의문사위원회, 김준배 사망 '민주화 운동 관련' 인정... 논란 예상

9일 의문사위원회가 97년 경찰의 검거를 피해 도주하다가 추락사 등의 요인으로 사망한 한총련 간부를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www.minjoo.go.kr, 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총련(hcy.jinbo.net)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경찰과 경찰이 대의원들에 대한 검거를 늦추지 않고 있어 한총련 간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한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경검과 보수언론, 우익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결정과 함께 아파트(광주시 북구 오치동 소재)에서 추락한 김씨를 둘동이로 폭행한 이아무개 경장(광주 남부경찰서)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독직폭행)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문사위원회가 현직 경관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당시 27세, 광주대학교 금융학과)씨는 그해 9월 15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체포를 피해 13층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선을 타고 도주를 기도하다 지면으로부터 3~4m 되는 위치에서 추락, 다음 날 0시33분경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

광주지검의 정윤기 검사는 발생 하루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했지만, 한총련과 김씨 유족은 김씨의 사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며 장례를 거부하고 투쟁에 나섰다. 결국 같은 해 10월 19일 김씨의 시신은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지만, 사인을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김준배 사망사건'의 양대 쟁점은 김준배 씨의 죽음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 여부와 '이적단체' 한총련 수배자였던 김준배 씨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여부였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원회는 두 가지 모두를 인정했다.

<클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준배 사건 결정문>

의문사위원회는 먼저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시 과도한 경찰특진제에 따른 부당한 폭력 치 공작, 검거과정에서의 '미란다 원칙' 위배, 경찰관의 폭행(목격자 1인 증언), 해외 법의학자(일본)의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결정했다.

의문사위원회는 우선 "김준배의 사망 직전 경찰 내부에 공안사범 체포에 대한 특별 진급 및 포상제가 프락치 공작 등 김씨에 대한 무리한 검거 시도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문사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에서 "97년 경찰 특진이 이뤄진 300건 중 29%가 한총련 수배자 검거와 관련된 것이었고, 광주의 경우 공안 담당이 아닌 민생 담당 경관들 까지 수배자 검거에 혈안이 돼 민생치안이 말이 아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의문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2소대 도아무개 경장이 김씨 사망 전 김씨의 선배 최아무개씨와 후배 전아무개씨에게 김씨의 은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1300만~1500만원의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 경장이 전씨에게 먼저 현금 500만원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최씨와 전씨에게 각각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전씨는 8월말 경 김준배의 어자친구 배아무개씨를 통해 김씨의 소재를 알아낸 후 김씨에게 자신의 자취방으로 오라고 권했고, 이에 따라 9월13일 이후 김준배는 전씨의 자취방에 머물게 된다.

의문사위원회는 또한 "당시 경찰은 김준배를 체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전부터 부근에 배치되었던 경에 비추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체포행위를 준비하였음이 분명하고, 김준배는 무술유단자로서 그 전에도 고종에서 뛰어내려 체포를 피한 사례로 보아 김준배가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았던 상황임에도 그의 도주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김준배의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장구의 설치 및 구급차 대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5일 저녁 8시 전씨는 도 경장과 만나 김준배가 자신의 자취방에 있음을 신고했고, 도 경장은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소대장 최모에게 경찰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1소대원 25명이 저녁 10시30분경 아파트에 들이닥치자 김준배는 베란다 난간을 넘어 아파트 외벽 케이블선을 타고 밑으로 도주하다가 4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동료들이 13층으로 올라간 동안 혼자 1층 경비실 부근에 배치된 이아무개(당시 순경, 현재 광주 모 경찰서 경장)씨는 13층으로부터 '밑으로, 밑으로'라는 외침을 들었다. 몽동이를 듣는 이 순경은 마침 화단 위로 떨어진 김준배를 발견하고 '여기 있다'고 외치며 넘어져 있는 김준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고 또 몽동이(나무몽동이 또는 경찰봉)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 순경은 김준배를 폭행하기에 앞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계단을 통해 뛰어내려온 신원불명의 경찰관을 김준배(일행)로 오인, 몽동이로 1회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원회는 "당시 아파트 2층에 살던 신아무개씨가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목격 사실만을 물고 내용에 관한 조사를 하



▲ 9월 기자회견장에서의 김준배 제1상임위원장, 한성별 의문사위원회 위원장(원쪽부터)

지 않았고, 진정 사건 처리시에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원회는 "체포과정에서 수반되는 폭행 등이 행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당초 검찰 조사와 달리 김준배의 추락 시작 위치가 3층 밑 부분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이 순경이 저항하지 않는 김준배를 몽동이와 발로 심하게 폭행한 점, 당초 추락사로 판단한 부검의 박아무개씨 역시 폭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점으로 미뤄 김준배의 사인(심장파열)이 이 순경의 폭행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순경이 체포과정에서 화단에 쓰러져 저항하지 않고 있던 김준배를 수 회 발로 밟고 몽동이로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로,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따라서 이 순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죄로 경찰총장에게 고발한다"

이 순경은 의문사위원회에 3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김준배의 폭행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문사위원회는 김준배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김준배의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학생운동 행적이 대체적으로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것이거나 군사독재로부터 파생한 역사적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었고, 1997년 당시 사회적 상황(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진상규명, 김현철 구속 운동)도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2) 사망 전 김준배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절차적으로 적법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문제되지만,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낭용된 사례를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상당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고, 특히 제7조 위반자들에 대하여는 거의 예외없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승인했다."

의문사위원회는 또한 결정문에서 "한총련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이나 규약(주한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북미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목적하는 바가 서로 다르면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북한은 남한의 국방력의 악화를 틈타 무력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함에 대하여 한총련은 미군이 대한민국 군대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등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민족현실에 대한 비애에서 출발하여 민족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다.

북한은 또 대남 적화를 위한 목적으로 연방제통일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총련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민족대단결을 꾀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통일방안으로서의 연방제통일안을 주장하고 있다.

북미평화협정에 관하여 보면 한총련은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동조하기 위하여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1953년 북미 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그대로 존속중이어서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전쟁상태가 종식되는 것이어서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도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하여 보면, 한총련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서 오용 또는 남용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며, 북한에 동조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김준배의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의문사위원회는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의 신속한 개정 내지 폐지(대체입법 포함)를 위한 노력을, 경찰과 경찰에 자체적인 강찰을 각각 권고했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9일 기자회견에서는 '의문사위원회의 한총련에 대한 입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김준배 씨의 아버지 김현국 씨
© 오마이뉴스 손병관

김준근 제1상임위원은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9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이나?"는 질문에 "대법원 판례는 민주화 운동 여부의 결정에서 참고사항일 뿐이었다. 의문사위원회는 97년 한총련 활동중 사망한 김준배 개인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평가한 것이지, 현재의 한총련 활동까지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지난 4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5.3 동의 대사태'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자 보수언론과 경관 유족들이 반발한 일이 있다. 이 때문에 김준배 사건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반이나 연기됐다가 지금에서야 결정됐다"고 말해 막후 진통이 적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김준배의 아버지 김현국 씨는 의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내 생각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경찰 대응과 민주화보상위원회 결정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www.krdemo.org)는 10일 오전 11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폭행을 김준배의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 이윤성 위원의 반대의견 요지

지난달 29일 9명의 위원은 김준배 사건에 대한 주문 표결에 들어가 찬성 7, 반대 1(이윤성), 기권 1(문덕형)로 결정이 내려졌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윤성(법의학자) 위원은 "김준배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다수 의견은 기초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한 데에 기인한다"며 "김준배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김준배의 사망원인을 정하지 못했고, 사망원인을 야기한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다.

- 김준배의 주경에서 본 여러 가지 손상은 거의 모두 추락에 의한 손상이며, 특히 사망원인인 심장 파열은 추락에 의한 손상이다. 그렇다면 김준배의 사망은 추락에 기인한 것이고, 폭행에 의한 손상은 없었거나 또는 있었더라도 김준배의 사망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 다수 의견은 김준배의 소재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접보를 가진 김준배의 학교 후배에게 향응과 돈을 제공하였고, 영장의 접행 행위로써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비록 이러한 사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김준배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13층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베란다 밖으로 나가 유선방송케이블을 잡고 도주하다가 추락할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아파트 밖에 추락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매트리스를 까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현실성이 없는 지나친 요구이다.

- 김준배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만약 체포 과정에서 다소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거나 또는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는 결정을 한 다수 의견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 손병관

국가기관, 보안법 개폐 첫권고

의문사규명위 “제7조는 국제인권규약 위배”
“한총련 이적단체로 규정은 부당”
전 간부 김준배씨 민주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9일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가입 등)를 국제인권규약 기준에 맞게 신속히 개정·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규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활동을 하다 숨진 김준배(당시 27岁·한총련 5기 투쟁국장)씨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규정이 점부

비판세력에 대해 폭넓게 오용·악용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 및 폐지 권고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명위는 결정문에서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과 관련해 “한총련은 전국 100만 대학생의 자치조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북·미 평화협정 등 한총련의 강령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주장하는 목적과 취지가 북한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규명위는 이밖에 김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추락과 이후 폭행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씨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떨어진 뒤, 당시 겸거 경찰관인 이아무개(현재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씨가 쓰러진 김씨를 밀로 밟고 몽둥이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

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이씨를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당시 사건을 축소수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숨겼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명위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한총련에서 문제가 된 강령(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투쟁국장으로서 한보비리 진상규명, 대선자금 공개 등에 대해 학생운동 차원에서 대응했다”며 “김씨의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영한 경제질서와 민주적인 정치제도 등을 요구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밖에 김준배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추락과 이후 폭행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씨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떨어진 뒤, 당시 겸거 경찰관인 이아무개(현재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씨가 쓰러진 김씨를 밀로 밟고 몽둥이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

의문사조 “보안법 개정·철폐를”

국가기관으로 처음 주장 파문

“보안법 따른 한총련 이적 규정도 문제”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한총련 간부였다는 사실이 그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1997년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세·광주대)씨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주장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활동은 한보비리 규명, 대선자금 공개 등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한 것 이었음에도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규정됐다”며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국보법에

총련 제5기 투쟁국장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김씨의 행위는 민주

한총련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이날 김씨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보상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에 요청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국보법의 개정 또는 철폐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김씨가 추락 직후 경찰관에 의해 폭행당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몸에 구티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으로 미뤄 김씨는 추락과 폭행 모두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김씨를 폭

행한 광주 남부경찰서 李모(32)경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대법원은 98년 7월 30일 한총련 의장 강 위원(당시 25세·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친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밝히고姜씨에 대해 징역 5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姜씨는 97년 4월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서 제5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도심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한총련 간부의 민주화 인정 논란

의문사(議問死) 진상규명위원회가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의 의문사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한총련의 이적성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씨는 광주대 재학 중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 가입·구성,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1997년 10월 은신 중이던 아파트 13층에 들이닥친 경찰을 피해 아파트 외벽 케이블선을 타고 달아나니 추락해 숨졌다.

논란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영장이 발부돼 체포과정에서 숨진 사람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총련은 96년 연세대 폭력사태 이후 98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친양·고무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

직'이라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 사건 발생 때까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확정판결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가입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법의 개폐를 정부에 정식 권고했다.

한총련의 과격한 노선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관찰하려는 태도 등은 학생운동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었다. 최근 한총련이 일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적단체 규정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한총련 간부의 사망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짓는 것은 일반인의 정서에 비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난 4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가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별써 잊었는지 궁금하다.

한총련간부 '민주화' 인정 논란

의문사 "이적단체 규정 부당"… 국보법 개폐 권고

대법원 판결과 달라 保-革격돌 예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9일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의 간부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국가보안법에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1997년 광주구 오자동 친구의 아파트에서 경찰의 주적을 피해 달아나니 떨어져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金準培· 당시 27세)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인정했다.

규명위는 "김씨가 6·6 광부동 재전재 청산과 노동법 등의 날치기 통과 규탄, 한보비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한 것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므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민주화보상심 위원회에 김씨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 김씨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난 이모 경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구시대 청산을 미진하게 해 형식적 법질서와 실질적 정의가 충돌하는 경우 실질적 정의 구현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찬철(朴讚澈)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지난번 민주화보상심의 위가 동아대 사태 관련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 것과 같은 실수"라며 "국가기관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것을 다른 국가기관이 뒤집는다면 국가의 계통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규명위는 국보법과 관련해 "냉전질서의 산물이며 권위주의 통치에 악용되어 왔다"면서 "국보법을 국제 인권기준에 맞도록 신속하게 개정 내지 폐지(대체입법 포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폭력시위 주도… 경찰추적 피하다 추락死"

당시 수사자휘 검사 반박



해 민주헌정질서를 침해했다"며 "김씨는 민주화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지첨장은 "진상규명위는 신빙성 있는 목격자의 진술과 일본 법의학자의 일방적인 소견만으로 김씨가 경찰관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고 단정했다"며 "김씨는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추락해 숨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한총련·민주화운동·보상·총회

한총련간부 민주화인정 논란

의문사규명위, 보상 요청... 보안법 폐지도 권고

'이적단체' 규정한 대법원 판례와 정면배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해 도주하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세)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의문사'로 인정한 뒤 국보법의 개정 및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는 9일 김씨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민주화보상심의위에 요청했으며, 당시 검거반 경찰 이모(현 전남경찰청 경장)씨에 대해 추락한 김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독직폭행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문사위의 이번 결정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98년 대법원 판례는 물론, 추락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라는 당시 부검결과와도 어긋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과 사망원인을 둘러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위는 결정문에서 "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대선자금공개, 한보비리 진상규명 등 김씨의 활동은 전체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김씨의 죽음에 대해 9명의 위원 중 7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보안법 폐지' 국가기관 첫 제기

한총련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보상요청도

의문사진상규명위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숨진 김준배씨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신속히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전부와 국회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 한상범 위원장은 "현법재판소는 90년 국보법 제7조에 대해 법적용을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한정적 합헌성을 인정했다"며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권안보를 위해 오·남용되는 국보법은 개정 내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이어 "구시대 청산 미진으로 인한 형식적 법질서와 실질적 정의가 충돌하는 경우 최선의 선택은 실질적 정의구현"이라며 "민주화는 이를 가로막는 구시대의 법적·제도적

모순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문사규명위는 이날 김씨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따른 의문사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김씨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아파트 3층에서 떨어진 김씨를 폭행한 경찰 이모(현 전남경찰청 경장)씨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자체감찰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배장수기자 cameo@kyunghyang.com

한총련간부 민주화 인정 '논란'

의문사규명위 김준배씨 보상 요청

사법부선 한총련 이적단체로 규정

당시 수사검사 "김씨 민주화와 무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9일 199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김준배씨(당시 27세·한총련 투쟁국장)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인정했다.

이는 사법부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5기 한총련 핵심간부였던 김씨의 활동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한총련 이적규정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진상규명위는 "김씨 사망 당시는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와 대통령 아들 정치개입 등 정부의 권력 행사방식이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었다"며 "날치기 통과 규탄, 한보비리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한 김씨의 활동은 개별적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숨진 김씨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한총련은 김씨 활동 이전인 4기까지 그 강령이나 행동이 5기 이후의 것들과 대동소이함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기소, 처벌된 예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민주화보상심의위에 김씨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했으며 김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난 경찰관 이모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는 "김준배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며 김씨의 사인은 추락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검사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한총련 제5기 투쟁국장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각종 폭력행위를 주도한 김씨의 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헌정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검사는 이어 "위원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로 제시하지 않은 채 신빙성없는 목격자 진술과 일본 법의학자의 일방적 소견만으로 경찰관의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했다"며 "김씨의 사망원인은 추락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남호철 하운해기자

의문사규명위

보안법 개정·폐지 권고

국가기관으로 처음으로 제기

한총련간부 민주화관련자 인정

지난 9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광주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출신 김준배(당시 27세)씨 사망사건은 민주화운동과 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시로 발생한 의문사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30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가 벌었던

군부독재 잔재 청산운동과 노동악법 폐弛 및 대선자금 공개 투쟁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5기 한총련의 핵심 간부였던 김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함에 따라 한총련의 이적

성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

다.

이와 관련, 규명위는 "한국이 가입한 유엔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비춰볼 때 국보법을 근거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규명위는 특히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해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규명위는 김씨 사건을 민주화 관련 의문사로 인정함과 동시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넘겨 명예회복 및 보

상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춘천지검 영월지청 정윤기 지청장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화정질서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주화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김씨 사건은 명백한 추락사"라고 주장했다.

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과태료 7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정검사는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도 위법이며, 이의신청과 현법쟁송 등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의문사委 국보법 개·폐 거론 논란

'이적단체' 한총련 간부등

민주화 인정 보혁갈등 조짐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간부였던 김준배씨 사망사건과 관련, 김씨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판정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를 거론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출범초기 국보법 개·폐를 공식 검토하고, 최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면서 불거졌던 보·혁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힘을 얻은 한총련은 오는 20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문화제'

를 시작으로 10만인 서명운동,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에 대한 유엔인권위 제소등 합법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며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의문사규명위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한총련 전·현직 간부들이 민주화심의위에 명예회복을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불씨는 여전하다. 대법원은 1998년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등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김준배씨 사건 쟁점에 대한 의문사규명위원회 견해

쟁점	다수의견	소수의견	기권
김씨 활동은 민주화 운동인가	권위주의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 7명	김씨 죽음은 민주화 운동과 무관한 추락사 1명	1명
한총련은 이적단체인가	이적단체 여부는 판단 않겠다 5명	이적단체 규정은 철회해야 한다 2명	2명
국보법 개정·폐지 해야 하나	권위주의 산물로 폐지해야 한다 7명		2명

* 의문사 규명위원회 총 9명

이적규정 한총련간부 사망 민주화인정 논란

의문사委 결정… 大法판결과 달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9일 1997년 한총련 5기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숨진 김준배(당시 27세)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함에 따라 한총련의 이적규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총련 현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속기관인 한총련 전 핵심간부의 활동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고 한총련의 이적규정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검찰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제5기 한총련부터 그 이후 한총련에 대해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이적단체로 규정, 구성원들을 기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 스

스로도 제5기 한총련과 강령 및 활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제4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규정한 사례가 없고 현 한총련이 문제가 됐던 강령을 수정하는 상황인 만큼 한총련의 이적성은 명백한 것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 기입사건을 다른 국내법원 판결에 대해, 국보법 제7조는 국제인권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한 적이 있다"며 "이 결정에 비춰 본다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검찰과의 입장차와 함께 의문사규명위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 김씨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수사지휘 검사였던 정운기 검사(현 영월지청장)는 이날 "김준배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며 김씨의 사인은 추락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팩스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한총련 제5기 투쟁국장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각종 폭력시위를 주도한 김씨의 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민주현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현정 질서를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석규기자 skpark@sgt.co.kr

2002. 7. 10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규정·보안법 개폐 권고

保革세력 충돌 움직임

“그렇다면 한총련이 민주화 단체란 말인가.” “이 기회에 한총련 아직 규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한총련 간부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판정하고 국보법 개정, 철회를 권고했다는 소식이 일어지면서 관련기관과 단체간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특히 김철은 “한총련 자체는 여전히 이적단체”라며 관련자들을 계속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위원회의 판정과 권고를 즉각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보혁 세력간 충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실정법 일부 부인’ 큰 파장
우선 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기존 실정법의 틀을 일부 부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예상과 달리 9명 위원 중 ‘절대다수인 7명’이 김준배(전 한총련 투쟁국장· 사진)씨와 민주화 운동 인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견에 따라 김씨 의문사를 불러온 원희가 국보법이라고 판단, 개정 및 철회 권고안을 제시하는 결단을 내리기까지 했다.

또한 2명의 위원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북에 대한 고무, 친양, 선전’이나 국가변란이 한총련의 1차 목표가 아닌 만큼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대법원 판결(1998년)을 정면부인했다.

시민단체 학계 등은 반을 엿갈려

그러나 김철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김철 공안관계자는 “위원회는 김씨 개인에 대한 판단인 했을 뿐”이라도 한총련의 전북 이적활동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색깔’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대학가는 ‘용기 있’, ‘경장’이라며 환영했다.

한여연대 총석인(洪錫仁) 연대사단장은 “한총련에 대한 규정이 시대적으로적인 것임이 새삼 확인됐다”며 “친양고무 등 악질 조항을 담고 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김준배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하고 있다.

“용기있는 결정…즉각 현실화해야”

“現상황서 보안법 개폐는 시기상조”

검찰선 “실정법 따라 계속 사법처리”

는 국보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曹國) 법학 서울대 교수는 “대다수 현법, 형법학자와 유엔 인권위원회도 (국보법 폐지) 수 차례 권고했다”며 “국보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혜식(申惠植) 민주참여네

● 김준배씨 의문사

이적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김씨가 97년 9월 광주 오동 후배의 아파트에 머물다 경찰의 추격을 받고 13층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사했다고 당시 검·경이 발표했던 사건. 그러나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추락 후 경찰의 구타사실이 밝혀졌으며, 일본 법의학자는 김씨의 사인이 추락보다는 구타에 있다는 소견서를 냈다.

2002. 7. 10

한총련 핵심간부 활동 민주화운동 규정 논란

97년 김준배씨 사망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 공식 인정
大法 이적단체 규정 배치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핵심 간부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국가 보안법의 오·남용은 권위주의 통치의 대표적인 현상”이라며 국보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도록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공식 제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1면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9일 1997년 9월 경찰 추적을 받다 추락한 뒤 구타 당해 숨진 광주대생 김준배(金準培·당시 27세·한총련 투쟁국장)씨 사건과 관련, “김씨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주화운동을 공식 인정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2면에 계속됩니다

☞ 1면 ‘한총련 논란’서 계속

위원회는 “김씨는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규탄, 한보비리 사건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활동을 했다”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실정법과의 충돌여부를 떠나 의문사 특별법상으로는 엄연한 민주

화 운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1998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의 강령이 일부 북한의 입장과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의 취지 속에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적성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위원회의 소수의견도 제기됐다.

[사설] 국보법 논쟁 이젠 매듭져야 *

의문사진상규명위가 한총련 핵심간부로 활동하다 숨진 김준배씨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따른 의문사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권고했다. 국보법에 근거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김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근본 원인임을 강조한 것이다. 국보법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보법 개·폐의 현실적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이번 발표는 한총련 자체의 이적단체 규정과 별개로 구성원 개인의 활동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한총련의 이적성 시비나 소모적 이념논란보다는 국보법의 개·폐라는 본질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지한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위의 발표는 한마디로 현행 국보법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실정법'과 '실질적 정의'가 충돌하는 모순적 사례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보법 중 특히 찬양고무죄(제7조) 등 일부 조항은 그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권위주의 정권시절 아래 공권력의 오·남용에 따른 술한 인권침해를 초래해 왔고 국제 사회에서도 비난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이 때문에 현행 국보법이 어떤 식으로든 손질돼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이미 공감하는 상황이며 현 정부도 누차 개정의지를 밝혀왔다. 일부 문제조항을 손질하는 부분개정론, 폐지하되 형법에 흡수하거나 대체입법하는 방안 등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도 나올 얘기들은 다 나왔다. 그럼에도 이념갈등 심화 등 '상황논리'와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논의를 짐짓 외면해온 게 저간의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유린의 빌미가 돼온 국보법을 계속 방치할 경우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되레 깊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합리적 법치주의의 구축을 통한 체제의 우월성 확보가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의 수단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진상규명위의 발표를 계기로 시류나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보법 개·폐문제가 진지한 공론의 장에 오르기 바란다.

보안법 개폐 논의 살려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주목할 만한 권고결정이 나왔다. 규명위가 1997년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숨진 한총련 5기 간부 김준배씨 사건과 관련해 내린 권고의 뼈대는 그가 공권력의 위법한 권리행사로 숨졌으며, 그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민주화 운동이었고,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김씨 사건에 대한 결정은 상당한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다수결로 정해졌다고 한다. 규명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찬반으로 갈리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예민한 부분을 정면으로 다루었음을 보여준다. 규명위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7조의 신속한 개폐를 요구한 데 대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도 한 쪽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좀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려면 이 논란을 피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시절 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주장했지만, 권력을 쥐

고 나서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규명위가 이번에 개폐를 권고하며 든 근거는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규약'이다. 규명위는 같은 맥락에서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수구보수 세력들은 북한 체제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폐쇄적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논의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한편, 김씨 사건의 수사자획 검사였던 정윤기 영월지청장이 김씨가 검거하려던 경찰들의 구타가 아니라 추락에 의한 충격으로 숨진 것이 명백하다며 규명위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온당하지 못한 행위다. 규명위의 거듭된 출두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